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건번호 제2018 - 67 - 565호

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이사

의 결 일 2018. 11. 28.

주 문

1. 피심인은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이용자의 계좌번호를 저장할 때는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할 것
 - 나.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보조저장매체 등에 저장할 때에는 이를 암호화할 것
3. 피심인은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은 달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금 액 : 20,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라.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

이 유

I. 기초 사실

피심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의 판매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 위탁을 받은 사업자로 같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제28조 등의 규정이 준용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 및 최근 3년간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의 일반 현황 〉

대표이사	설립일자	자본금	주요서비스	종업원 수
			이동통신 및 초고속인터넷 판매	명

〈 피심인 매출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평 균
매 출 액				

※ 자료 출처 :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

II.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대상

방송통신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한 이용자 민원(불법 보관)이 국민신문고에 접수(2018.4.13.)됨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를 조사하였고, 피심인에 대한 현장조사(2018.6.14.~15.)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피심인은 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등에서 이동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한 행위

피심인은 2014.4월부터 2016.7월까지 엑셀파일 형태로 판매일보 등을 작성하면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25건 및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1,077건 등 총 1,402건을 수집·저장한 사실이 있다.

[그림 1] 엑셀파일에 저장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A	B	C	D	E	F	G	H	I	J	K	L	M	
1	2014년 09월 22일 판매 일 보 ()												
2													
3	NO	개통 시간	인증번호 (주민번호)	카드구분 (신규, MNIP, 보상, 일반, 학한기반)	판매유형 (신규, MNIP, 보상, 일반, 학한기반)	고객명	고객번호	단말기 (모델명)	일련번호	유심 일련번호	발부 계좌	판매가	리베이트 (기준) 학한=0인
4	1		861127	스페셜	보상	박	7234	G605	0016446	025	30	748,000	20,000
5	2		981009	스페셜	신규	오	6383	F460	0135093	1338	30	924,000	260,000
6	3		010110	스페셜	신규	오	8999	G906	0327370	1338	24	899,800	240,000
7	4		411115	스페셜	보상	이	3115	G906	0295145	2	30	899,800	170,000
8	5		940118	스페셜	신규	김	5412	G906	0405404	1338	24	899,800	240,000
9	6		020623	스페셜	학한기반	박	9102	아이폰 5C	C7JLJHK NFL01	025	24	396,000	60,000
10	7		070815	스페셜	신규	최	8718	F370	0061593	1338	24	259,600	340,000
11	8		980117	스페셜	신규	김	2173	F460	0136135	1338	24	924,000	260,000
12	9		870619	스페셜	보상	최	3114	G900	0467950	2	24	868,800	100,000
13													

나. 개인정보의 암호화{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중 암호화}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판매일보를 작성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를 업무용 컴퓨터에 엑셀파일로 저장하면서 암호화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그림2] 엑셀파일에 저장된 개인정보 항목

	A	B	C	D	E	F	G	H	I	J	K
1											
2											
3											
4											
5		날짜	고객명	연락처	송금액		계좌번호			비고	
6			이	8896	140,000		농협 544		장		
7			김	9446	34,000		농협 3020		1 김		
8		2일	정	4166	208,740		농협 3020		1 송		
9		3일	이	3166	484,000		하나 7119		07 이		
10			박	3676	410,000		기업 1830		12 박		
11			김	5025	550,000		신한 110		7 전		
12			손	5226	570,000		국민 805		6 손		
13			이	8838	343,000		농협 439		김		
14		5일	김	7169	603,000						
15			고	5040	450,000		하나 7139		07 조		
16		9일	이	2053	235,000		국민 202		5 이		

다.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행위(정보통신망법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중 목적을 달성한 경우)

피심인은 2015.1.2.부터 2018.6.15.까지 에서 제공한 대리점 영업지원 시스템 의 판매현황 페이지 내 ‘영업승인번호’ 입력란에 고객의 생년월일 및 이동전화번호 총 42,414건을 파기하지 않고 저장 관리한 사실이 있다.

[그림3] 시스템에 저장중인 이용자의 개인정보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1	판매일자	판매사	간	영업승인번호		약정	약정기간	판매유형	영업그룹(대)	영업그룹(소)	판매처								
2	2015-05-31	19A10	분	901116372		약정	24	신규활부(3G)	판매점A										
3	2015-05-31	18A10	분	901116372		약정(미반납)	24	기변활부(3G)	직영										
4	2015-05-31	18A10	분	7719262		약정(미반납)	24	기변활부(3G)	판매점A										
5	2015-05-31	17A15	분	7316432		약정(미반납)	24	기변활부(3G)	판매점A										
6	2015-05-31	17A14	분	8312235		약정	24	신규활부(3G)	판매점A										
7	2015-05-31	17A14	분	9914721		약정(미반납)	24	기변활부(3G)	직영										
8	2015-05-31	17A13	분	0012289		약정	24	신규활부(3G)	판매점A										
9	2015-05-31	17A13	분	0114542		약정(미반납)	24	기변활부(3G)	직영										
10	2015-05-31	17A13	분	7214696		약정(미반납)	24	기변활부(3G)	직영										
11	2015-05-31	17A13	분	7719827		약정(미반납)	24	기변활부(3G)	판매점A										
12	2015-05-31	17A11	분	7719331		1약정		신규활부(3G)	직영										
13	2015-05-31	17A10	분	6719444		약정	24	신규활부(3G)	판매점A										
14	2015-05-31	16A15	분	5719312		약정(미반납)	24	기변활부(3G)	판매점A										
15	2015-05-31	16A14	분	8312364		약정(미반납)	24	기변활부(3G)	직영										
16	2015-05-31	16A12	분	9117679		2약정		신규활부(3G)	직영										
17	2015-05-31	16A10	분	5014900		약정	24	신규활부(3G)	판매점A										
18	2015-05-31	16A10	분	7418624		약정(미반납)	24	기변활부(3G)	판매점A										
19	2015-05-31	16A10	분	0318584		약정	24	신규활부(3G)	직영										
20	2015-05-31	15A13	분	7314977		약정(미반납)	24	기변활부(3G)	판매점A										
21	2015-05-31	15A11	분	6919420		약정	24	신규활부(3G)	판매점A										

라.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방송통신위원회는 2018. 7. 17.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 시정조치(안)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18. 7. 27.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제1호)',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제2호)',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제3호)'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고시한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고시」 제1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를 도매 제공 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본문의 영업상 목적이란 이동전화번호를 이용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해설서」는 법제23조의2제1항에 대해 본인확인기관이거나 법령이나 고시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으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도 법령 시행 후 2년 이내 파기하도록 하고 있어 2014년 8월 이전까지 삭제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나.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제4호)’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전송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및 바이오정보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의 암호화 저장(제2호)’, ‘그 밖에 암호화 기술을 이용한 보안조치(제4호)’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5조제6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에 따라 위 기준 수립·시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5-3호, 이하 ‘고시’라 한다) 제6조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계좌번호 등 정보에 대해서는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보조저장매체 등에 저장할 때에는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시 해설서’는 고시 제6조제2항에 대해 개인정보 유·노출 시에 2차 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계좌번호 등에 대해서는 안전한 알고리즘(128비트 이상)으로 암호화하여 저장·관리해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제4항에 대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보조저장매체 등에 저장할 때에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이 탑재된 암호화 소프트웨어 등을 활성화하거나 개인정보의 저장형태가 오피스 파일 형태일 때에는 해당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암호 설정 기능을 활용하고, MS Windows 등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암호화 기능을 활용하도록 해설하고 있다.

다.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3조제1항 단서는 “다만,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히 수집 대상 개인정보로 허용된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그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해설서’는 법 제29조제1항에 대해 개인정보 취급 위탁 시에도 위탁 업무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을 정해 파기 사유가 발생하면 취급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라.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3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공무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민원인이 증거로 제출 자료가 현장 조사에서 확보된 피심인의 가입자 자료와 일치하고, 이 같은 수집·보관은 민원인이 피심인의 직원으로 재직 시 업무상 행한 행위로서 피심인의 행위에 귀속되므로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된다.

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한 행위

피심인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바 없고, 법령 및 고시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심인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1,402건을 수집·보유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제1항(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을 위반한 것이다.

나. 개인정보의 암호화{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중 암호화}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이 이용자의 계좌번호를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지 않고 엑셀파일 형태로 저장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4호(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중 암호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2·4호 및 고시 제6조제2·4항을 위반한 것이다.

다.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행위{정보통신망법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중 목적을 달성한 경우}

피심인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처리 위탁받은 통신서비스 판매 및 가입이 완료되어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된 이용자 개인정보 1,056건이 담긴 파일을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1항(개인정보의 파기 중 목적을 달성한 경우)을 위반한 것이다.

< 피심인의 위반사항 >

사업자 명	위반 내용	법령 근거		
		법률	시행령	세부내용(고시 등)
	주민등록번호	§23의2①	-	법적 근거 없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한 행위
	암호화	§28①4호	§15④2·4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보조저장매체 등에 저장할 때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 이용자의 계좌번호 등에 대해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한 행위(고시§6②·④)
	미파기	§29①1호	-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컴퓨터 등에 보관한 행위

IV. 시정조치 명령

1. 시정명령

가. 피심인은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이용자의 계좌번호를 저장할 때는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할 것 2)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보조저장매체 등에 저장할 때에는 이를 암호화할 것

다. 피심인은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은 달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여야 한다.

2.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 사용 제한)제1항,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제1항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2호·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별표9] 및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보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지침」(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9]와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이번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첫 번째에 해당하므로 1회 위반 과태료인 1,000만원을 각 적용한다.

〈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이상
다. 법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76조 제1항제2호	1,000	2,000	3,000
너. 법 제28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 제1항제3호	1,000	2,000	3,000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증거인멸·조작, 허위 정보 제공 등 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 기타 위반행위의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3조2제1항, 제28조제1항 위반 행위에 대해서 특별히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과태료를 가중하지 않는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당사자의 환경, ▲사업규모와 자금사정, ▲개인(위치)정보보호 노력정도, ▲ 조사협조와 자진시정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까지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3조2제1항, 제28조제1항 위반 행위에 대해서 특별히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과태료를 감경하지 않는다.

< 과태료 산출내역 >

위반조문	기준금액	가중	감경	최종 과태료
§23의2①	1,000만원	없음	없음	1,000만원
§28①4호	1,000만원	없음	없음	1,000만원
계				2,000만원

다. 최종 과태료

이에 따라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제1항, 제28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벌 칙

피심인이 정보통신망법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제1호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3조제1의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심인의 경우 ▲위반행위가 최초 적발된 점, ▲해당 사업자가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모두 파기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해 시정명령만을 부과하고 향후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처리한다.

V. 결론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제4항(시정명령) 및 제76조제1항제2호·제3호(과태료)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 또는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8년 11월 28일

위원장 이 효 성



부위원장 허 욱



위원 김 석 진



위원 표 철 수



위원 고 삼 석

